

제110회 임시회 제3차회의
2004. 6. 25(금) 10:00

검 토 보 고 서

- ① 제5교·연결접속도로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 ② 양평근린공원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제5교 및 연결접속도로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검 토 보 고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 : 2004. 6. 7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 : 2004. 6. 12
- 라. 의안번호 : 제2004-25호

2. 제안이유 및 사업개요

가. 제안이유

○ 상림리와 송정리는 최근 도시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거창읍의 강남·북을 연결하는 대부분의 교통량이 거창교에 집중됨으로써 교통혼잡이 가중되고 있어 도심진입 교통의 우회처리와 지역균형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송정리와 상림리를 연결하는 새로운 교량과 접속도로건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과 관련하여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거 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

나. 사업개요

- 위치 : 거창군·읍 송정리153-4 ~ 상림리 151-191
- 규모 : 410m(교량1개소 104m, 도로306m), 폭20m
- 기능 : 보조간선도로

3. 전문위원 검토의견

○ 2016년까지 거창도시기본계획상 제5교를 건설토록 되어 있으나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지 아니하여 건축허가와 관련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 민원해소를 위하여는 신속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기본계획으로는 건축제한이 곤란하며, 건축이 허가될 경우 향후 공사시행 시 보상금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됨.

○ 교량 및 접속도로 건설을 위한 사업비가 95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사업비 재원 조달이 불투명하여 시설결정 후 장기간 미집행시 오히려 군민들의 재산권행사를 제한할 우려가 있음.

-편입토지등에 소요될 보상예산을 확보하여 보상절차 우선 이행필요(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05신규사업으로 편성)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면 의견청취 대상은 주간선도로로 되어 있으므로 의견청취 요구한 동 건은 보조간선도로이므로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대상은 되지 않음.

○ 군의회에서 제시한 의견은 도시계획결정권자인 경상남도 지사가 이를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되는 것이므로 시설결정 시 원활히 결정되도록 하기 위하여 의견청취 요청한 것으로 판단됨.

4. 참고사항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①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것에 한한다)이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④ 생략

⑤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9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

①도시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② 생략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①~⑥ 생략

⑦법 제2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5조제3항 각호의 사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또는 변경결정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1. 법 제36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2.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광역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가. 도로 중 주간선도로(시·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군 상호간이나 주요지방 상호간을 연결하여 대량통과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로서 시·군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라. 공원(도시공원법에 의한 어린이공원을 제외한다)

양평근린공원시설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검 토 보 고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 : 2004. 6. 7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 : 2004. 6. 12
- 라. 의안번호 : 제2004-26호

2. 제안이유 및 사업개요

가. 제안이유

○ 지역주민의 건강과 정서함양에 기여할 수 있는 읍민 생활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중인 양평근린공원사업의 도시관리계획시설의 결정과 관련하여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

나. 사업개요

- 위치 : 거창군 · 읍 양평리 1190번지 일원
- 규모 : 107,275m²(32,451평)
- 주요시설 : 도로 및 광장, 군민의 숲, 족구장, 농구장, 다목적광장, 피크닉장, 주차장, 화장실 등

3. 전문위원 검토의견

- 읍민생활공원은 경남도가 푸른경남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시·군을 상징할 수 있는 공원을 시군별 1개소씩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군의 양평근린공원사업에 대하여는 2003회계연도 예산편성 시 장기계속사업으로 승인한 것으로 현재 기본 및 설계용역중에 있는 사업임.
- 동 사업에 편입되는 농경지에 대한 농림지역해제, 편입토지보상 및 토지수용등 사업시행등을 위하여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야 사업시행이 용이할 것임.
- 군의회의 의견은 도시계획결정권자인 경상남도지사가 이를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되는 것임.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절차를 거친 후 동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청취하는 사항으로 의견청취와 관련하여 의회와의 협의 하에 위치 선정하였으며, 2003회계연도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한 사항이므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참고사항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①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것에 한한다)이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④ 생략

⑤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9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

①도시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② 생략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①~⑥ 생략

⑦법 제2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5조제3항 각호의 사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또는 변경결정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1. 법 제36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2.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광역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가. 도로 중 주간선도로

라. 공원(도시공원법에 의한 어린이공원을 제외한다)